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2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이개호 · 양부남 · 정진욱
황명선 · 안도걸 · 이정문
문금주 · 윤준병 · 송옥주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특산주는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하면 투입량이 극소량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곤란함.

또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당시의 원료를 변경할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추천요건 및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전통주 산업의 세부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다른 인증제도보다 짧아 인증업체의 재인증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가 주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소화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예”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로, “정한”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탁주(「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
- 2) 약주(「주세법」 [별표] 제2호나목)
- 3) 청주(「주세법」 [별표] 제2호다목)
- 4) 과실주(「주세법」 [별표] 제2호마목)
- 5) 증류식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 1)부터 4)에 따른 주류)
- 6) 일반증류주(「주세법」 [별표] 제3호라목)
- 7) 리큐르(「주세법」 [별표] 제3호마목)
- 8) 기타 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4. “주원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료를 말한다.

가.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다수의 원료. 단,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 등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료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 단, 수출품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세청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주세법」 제5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청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료의 변경)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지 아니한 원료를 주류 제조에 주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원료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등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면허”는 “원료의 변경”으로, “발급”은 “승인”으로 본다.

제8조의3(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류제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주류 제조에 이용·사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등의 조사
2.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국세청장

가. 면허 유형

나. 출고량 및 출고액

다. 주세액 및 면세액

2. 그 밖에 통계조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제1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과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조사
2.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원료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제조면허의 추천 또는 원료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의3제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 「주세법」 제2조제1호-----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정</u> 한 술	나.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예</u> ----- ----- ----- <u>정하</u> <u>는 요건을 갖춘</u> ----- ---
<u><신 설></u>	1) 탁주(「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
<u><신 설></u>	2) 약주(「주세법」 [별표] 제2호나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
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
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
은 제외한다.

3) 청주(「주세법」 [별표]
제2호다목)

4) 과실주(「주세법」 [별
표] 제2호마목)

5) 증류식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 1)부터
4)에 따른 주류)

6) 일반증류주(「주세법」
[별표] 제3호라목)

7) 리큐르(「주세법」 [별
표] 제3호마목)

8) 기타 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4. “주원료”란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원료를 말한다.

가.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다수의 원료. 단, 양
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
하는 주정(酒精) 등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료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나.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
단, 수출품은 제외한다.

5. ~ 8. (생 략)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

· 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5. ~ 8.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

----- 관할 세무서장-----

--. --- 「주세법」 제5조제1항제1호-----.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할 세무서장-----
-----.
----- 관할 세무서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원료의 변경) ① 시·도

지사는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지 아니한 원료를 주류 제조에 주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원료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승인 등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면허”는 “원료의 변경”으로, “발급”은 “승인”으로 본다.

제8조의3(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

리)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류 제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주류 제조에 이용·사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등의 조사

2.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제9조(통계조사)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계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국세청장

가. 면허 유형

나. 출고량 및 출고액

다. 주세액 및 면세액

2. 그 밖에 통계조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

③ · ④ (생략)

제11조(교육훈련)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⑤ (생략)

<신 설>

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1. ~ 3. (현행과 같음)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과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조사
2.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품질인증) ①·② (생략)

제22조(품질인증) ①·② (현행과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3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신설></u> 1. ~ 3. (생략) ③ (생략)	같음) ③ ----- ----- -- <u>4년</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2. <u>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